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77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백종헌

이달희 · 최수진 · 김소희

서명옥 · 서천호 · 김장겸

김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 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하고 그 임용 등에"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 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임 용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④ (생 략)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	5
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u>하고 그 임용 등에</u> 필	하고, 「지방공무원법」
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임용 등에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